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 8 선고 2018가합103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문환

피 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규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C이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매매 일자의 각 복공판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복공판을 인도하라. 위 복공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복공판의 해당 수량에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매매 일자의 각 복공판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복공판을 인도하라. 위 복공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복공판의 해당 수량에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하라.
-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1,185,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C 주식회사(이하 C)는 1991. 8. 2. 복공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4. 14.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7](#)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6. 30.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 2) 피고는 2014. 11. 3.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복공판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 12. 22. 현재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C 대표이사 E의 아들 F은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2. 21. 사임하고, 2017. 6. 23. 다시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 3) 원고는 2009. 2. 5.경부터 2016. 7. 30.경까지 C에서 근무했고, 2014. 4. 18. C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C의 감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재판상 화해 성립

- 1) 원고는 2006. 1. 13. C 명의 계좌로 199,000,000원, E 명의 계좌로 25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2. E, C, G1) 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61호로 ‘E이 2006. 1. 13.경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C과 G은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8. ‘1. E,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한다. E, G은 연대하여 2017. 8. 1.부터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E, G이 2017. 12. 31.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은 2018. 1. 1.부터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E, C, G은 연대하여 2016. 10. 25.부터 1항 기재 금원에 대한 이자조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3) E, C,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는 2016. 12. 2. 이 법원 2016가단114022호로 C을 상대로 2015. 7.부터 2016. 5.까지 매월 6,700,000원의 임금, 2016. 6. 임금 6,238,870원, 2016. 7. 임금 6,267,742원과 퇴직금 68,860,725원 합계 155,065,337원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20. ‘C은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8. 1.부터 2019. 10. 1.까지 매월 1일에 500만 원씩 총 2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C이 위 분할지급의무를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 7. 8. 확정되었다.

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복공판 매매계약의 체결

C은 2015. 3. 2.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복공판 7,142개(이하 이 사건 복공판)를 합계 1,698,222,9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 15, 17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4 내지 6, 8 내지 28, 을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원고는 2009. 2.경부터 C에 근무하며 생산관리 등 회사업무를 총괄하였고, C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4. 21.에는 C 감사로 등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그 소속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최종 체결일인 2016. 2. 25.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무렵 C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9.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09. 2. 5.경부터 2016. 7. 30.경까지 C에서 근무했고, C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14. 4. 14. 직후인 2014. 4. 21. C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25.부터 2016. 2. 5. 사이에 원고에게 수차례 각 5,700,000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 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8. 18. 이 법원 I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의 사업장 내 창고에 소재한 이 사건 복공판에 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7. 9. 27. 이에 기한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J 대표이사 K이 위 창고에 보관중인 복공판은 C이 아닌 피고 소유로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관중이라고 하여 집행불능이 된 점, ② 이에 원고는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복공판을 은닉하고 이를 허위로 피고에게 양도했다면서 E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이하 관련 고소사건)한 점, ③ 원고는 관련 고소사건에서 “E이 C은 부도가 나 물건을 판매할 수 없어 피고로 명의를 변경하여 물건을 판매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할 때 수차례 받는 통장의 표시할 내용에 ‘C’이라고 적은 것을 보면, 피고는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급여를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급여를 송금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무렵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공판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된 2017. 9. 27.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복공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복공판의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있는 상태에서 C이 그 판매만 피고에게 위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가 2017. 9. 27.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한바,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참조).

가) 연대보증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인 2006. 1. 13.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1. 25.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487,000,000원[= 원금 450,000,000원 + 이자 37,000,000원(= 37개월2) × 1,000,000원)3) 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지 않음에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이 사건 재판상 화해를 했을 뿐이다. 원고의 C에 대한 450,000,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18. 1. 1.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립한 것인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등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이상, 피고로서는 2006. 1. 13. C에 대한 원고의 450,0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했다는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금 및 퇴직금채권: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임금채권 일부 및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9. 2. 5.경부터 C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맺어 왔는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는데, ② 임금채권의 경우, 원고와 C의 근로계약에 기한 지속적인 근로제공으로 각 임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원고가 2016. 7. 30. 퇴사 이전까지 C에 근로를 제공하여 2015. 7.부터 2016. 7.까지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였고, ③ 퇴직금 채권의 경우, C은 2014. 4.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경영 악화를 겪어오다가 2014. 6. 30.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으며, 2015. 7.경부터 원고 임금을 체불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C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퇴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6. 2. 25.자 매매계약으로부터 5개월 정도 후인 2016. 7. 30. 원고가 퇴사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1. 25. 기준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202,185,616원[= 원금 135,000,000원 + 이자 67,185,616원(= 135,000,000원 × 15% × 1,211일4) / 365일)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무자력에 관한 판단

1)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참조).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약 1년에 걸쳐서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모두 C이 이 사건 복공판을 피고 명의로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그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C은 2014. 2. 19.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2013. 12. 31. 기준 C의 자산은 10,605,537,227원, 부채는 11,510,335,296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회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대전지방법원은 2014. 4. 14. 회생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회생사건의 조사위원은 2014. 4. 13. 기준 C의 자산은 7,593,408,626원, 부채는 9,657,665,477원인데, C이 청산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배당률/변제율은 47.38%, 회생절차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15.48%라고 보고한 사실, ④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2014. 6. 30.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4. 7. 15. 확정된 사실, ⑤ E은 수사기관에서 “C은 2014. 6. 30. 부도가 나 더 이상 C 명의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아들 명의로 피고를 설립하여 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⑥ C은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결손법인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1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부도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천안시 서북구 L 공장용지 10,574㎡(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M 창고용지 4,493㎡, N 공장용지 922㎡, O 전 268㎡, P 공장용지 260㎡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이 130억 원 가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회생절차 당시 C의 자산을 산정할 때 위 각 부동산은 C의 자산으로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2014. 4. 13. 기준 C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였던 점, C의 채권자 Q회사가 2014. 11. 3. 이 법원 R로 위 각 부동산 중 O 전 268㎡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각 부동산은 2016. 4. 22.부터 2016. 6. 28. 사이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복공판을 매각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② E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C이 2014. 6. 30. 부도가 나 C 명의로는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어 2014. 12. 4. 아들 S 명의로 피고를 설립했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복공판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C의 채권자라고 하는 T, U 등도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C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및 채권자들 몫으로 받은 복공판을 대신 판매하여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을 정리하고 그 다음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T, U이 C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T, U이 C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 Q유한회사, 신용보증기금, V을 비롯하여 10명 이상의 일반채권자들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수익의 배분 순서에 관하여 일부 채권자들의 동의만 얻은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약 17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복공판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C의 채권자들의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양도대금에 갈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최종 체결일로부터 4년이 넘게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복공판을 매도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C 대표이사 E은 2019. 6. 21. 변론기일에서 그때까지도 이 사건 복공판을 매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④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복공판을 매수한 뒤 이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여 2015. 3. 4.부터 2016. 4. 5.까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이 2019. 6. 21.경까지도 이 사건 복공판을 매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⑤ 피고는 사실상 E이 설립한 회사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E의 아들 F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손해행위의 최소의 범위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의 범위가 689,185,616원(= 487,000,000원 + 202,185,61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감정인 W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9. 11. 14. 기준 H-BEAM복공판(MMA코팅)(규격 1990*985*200)의 가격은 89,000원, MMA코팅복공판(1990*750*204)의 가격은 78,000원, 일반복공판(1990*750*200)의 가격은 67,000원, 저소음

H-BEAM복공판(MMA코팅)(1995*1000*216)의 가격은 8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단가가 변동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격역시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일반MMA복공판 및 H-BEAM복공판의 가격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단가가 유사한 MMA코팅복공판과, 일반복공판(제작품)의 가격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단가가 유사한 일반복공판의 가격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복공판의 가액은 550,924,000원[= ①

H-BEAM복공판(MMA코팅) 153,080,000원(= 89,000원 × 1,720개) + ②

저소음H-BEAM(MMA코팅)복공판 92,395,000원(= 85,000원 × 1,087개) + ③ 일반MMA복공판 50,778,000원(= 78,000원 × 651개) + ④ 일반복공판 164,887,000원(= 67,000원 × 2,461개)

+ ⑤ H-BEAM복공판 27,300,000원(= 78,000원 × 350개) + ⑥ MMA코팅복공판

28,314,000원(= 78,000원 × 363개) + 일반복공판제작품 34,170,000원(= 67,000원 ×

510개)]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참조), 감정인은 이 사건 복공판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거쳐 2019. 12. 14. 당시 이 사건 복공판의 시가를 산정한 것인바, 을

제22호증의 1, ②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손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해서 손해행위로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을

되돌려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원상에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는 원래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감소된 재산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그 방법은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재산 그 자체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재산 그 자체를 원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406조 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량의 대체물을 다시 취득하여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양도받은 목적물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복공판은 그 종류 및 규격, 수량으로 특정할 수 있는 대체물로서 만일피고가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복공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복공판을 다시 취득하여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대체물인 같은 종류의 복공판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할 복공판을 다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1 목록 기재 복공판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복공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복공판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복공판에 대하여 그 복공판의 해당 수량에 이 사건 복공판의 변론종결일 시가로 추정되는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C이 피고와 체결한 별지 1목록 기재 매매 일자의 각 복공판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적물을 인도하며,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목적물의 해당 수량에 별지2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보원, 판사 고지은, 판사 김한울

별지1

순 번	매체일자	복공판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1	2015. 3. 2.	H-BEAM복공판 (MMA코팅)	1990*985*204	78	410,000	31,980,000	3,198,000	35,178,000
		저소음H-BEAM(MMA코팅)복공 판	1995*1000*224	7	340,000	2,380,000	238,000	2,618,000
		H-BEAM복공판 (MMA코팅)	1990*985*204	70	410,000	28,700,000	2,870,000	31,570,000
2	2015. 3. 10.	저소음H-BEAM(MMA코팅)복공 판	1990*1000*216	90	340,000	30,600,000	3,060,000	33,660,000
3	2015. 3. 19.	일반MMA복공판	1990*750*200	465	260,000	120,900,000	12,090,000	132,990,000
4	2015. 3. 24.	저소음H-BEAM(MMA코팅)복공 판	1990*1000*216	203	340,000	69,020,000	6,902,000	75,922,000
		저소음H-BEAM(MMA코팅)복공 판	1990*1000*216	67	340,000 ⁶⁾	22,780,000	2,278,000	25,058,000
5	2015. 3. 31.	일반복공판	1990*750*200	10	220,000	2,200,000	220,000	2,420,000
6	2015. 4. 19.	H-BEAM복공판	1990*985*200	140	260,000	36,400,000	3,640,000	40,040,000
7	2015. 4. 25.	저소음H-BEAM 복공판 (MMA코팅)	1990*1000*216 (리브보강)	334	370,000	123,580,000	12,358,000	135,938,000
		저소음H-BEAM 복공판 (MMA코팅)	1990*1000*216	116	340,000	39,440,000	3,944,000	43,384,000
8	2015. 5. 19.	H-BEAM복공판	1990*985*200	210	260,000	54,600,000	5,460,000	60,060,000
9	2015. 5. 26.	일반MMA복공판	1990*750*200	93	260,000	24,180,000	2,418,000	26,598,000
10	2015. 6. 3.	MMA코팅복공판	1990*750*204	270	280,000	75,600,000	7,560,000	83,160,000
11	2015. 6. 11.	일반복공판	1990*750*200	20	250,000	5,000,000	500,000	5,500,000
12	2015. 6. 23.	일반MMA복공판	1990*750*200	93	260,000	24,180,000	2,418,000	26,598,000
13	2015. 7. 20.	저소음H-BEAM 복공판 (MMA코팅)	1990*1000*216	270	370,000	99,900,000	9,990,000	109,890,000 ⁶⁾
14	2015. 7. 30.	일반복공판	1990*750*200	95	220,000	20,900,000	2,090,000	22,990,000
15	2015. 8. 20.	H-BEAM복공판 (MMA코팅)	1990*985*204	1	480,000	480,000	48,000	528,000
		일반복공판	1990*750*200	10	220,000	2,200,000	220,000	2,420,000
16	2015. 8. 31.	H-BEAM복공판 (MMA코팅)	1990*985*200	1,571	9,000	14,139,000	1,413,900	15,552,900
17	2015. 9. 30.	MMA코팅복공판	1990*750*204	93	280,000	26,040,000	2,604,000	28,644,000
18	2015. 11. 20.	일반복공판	1990*750*200	500	240,000	120,000,000	12,000,000	132,000,000
		일반복공판 (세라폴)	1990*750*200	330	250,000	82,500,000	8,250,000	90,750,000
19	2015. 11. 25.	일반복공판	1990*750*200	10	230,000	2,300,000	230,000	2,530,000

		일반복공판	1990*750*200	200	248,000	49,600,000	4,960,000	54,560,000
20	2015. 11. 30.	일반복공판	1990*750*200	300	240,000	72,000,000	7,200,000	79,200,000
21	2015. 12. 21.	일반복공판	1990*750*200	100	254,000	25,400,000	2,540,000	27,940,000
22	2015. 12. 30.	일반복공판 (제각품)	1990*750*200	180	250,000	45,000,000	4,500,000	49,500,000
		일반복공판	1990*750*200	885	240,000	212,400,000	21,240,000	233,640,000
23	2016. 1. 15.	일반복공판	1990*750*200	300	240,000	72,000,000	7,200,000	79,200,000
24	2016. 2. 25.	일반복공판	1990*750*200	31	240,000	7,440,000	744,000	8,184,000
합 계				7,142				1,698,222,900

5) 원고는 단가를 240,000원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옳기로 보인다.

6) 원고는 1,098,900,000원이라고 계산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별지2

1. H-BEAM복공판: 78,000원
2. H-BEAM복공판(MMA코팅): 89,000원
3. MMA코팅복공판: 78,000원
4. 일반MMA복공판: 78,000원
5. 일반복공판: 67,000원
6. 일반복공판(제작품): 67,000원
7. 저소음 H-BEAM(MMA코팅)복공판: 85,000원

1)E의 동생이다.

2) 2016. 10. 25.부터 2019. 11. 25.까지 총 37개월

3) 원고는 4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

4) 2017. 8. 2.부터 2020. 11. 25.까지의 기간으로 1,212일이나, 원고 계산에 따른다.